

(붙임2) 개인형이동장치(PM) 카드뉴스

인천광역시 인천경찰청

PM(개인형이동장치)이 무엇인가요?

▶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기자전거(페달없이 전기로만 작동) 등 1인용 이동장치

▶ 시속 25km미만, 총중량 30kg미만

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기자전거

인천광역시 인천경찰청

PM 개정법령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해볼까요?

'21. 5. 13. 시행

도로교통법 (20. 12. 10. 시행)	도로교통법 ※ 처벌조항: 도로교통법 시행령
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(처벌없음)	☒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(벌칙금 2만원, 동승자 과태료 2만원)
☐ 운전면허없이 운전 가능(처벌없음)	☒ 면허(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)미소지 (벌칙금 10만원)
☐ 13세 미만 어린이사용 금지(처벌없음)	☒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(보호자 과태료 10만원)
☐ 동승자를 태워서 운행 행위 금지(처벌없음)	☒ 동승자 탑승시(벌칙금 4만원)
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(처벌없음)	☒ 등화장치 미작동시(벌칙금 1만원)
☐ 약물, 과로·질병등 운전(처벌없음)	☒ 약물, 과로·질병등 운전(벌칙금 10만원)

통행방법 ▶ 자전거도로 통행 [원칙] 또는 차도 우측 통행 (보도 통행불가)

운전자 준수사항 ▶ 자전거와 동일한 준수사항 적용

☒ 음주운전 금지 (벌칙금 10만원, 측정불응 벌칙금 13만원)

☒ 신호위반, 중앙선 침범, 보도주행, 보행자 보호위반 (벌칙금 3만원)

인천광역시 인천경찰청

안전수칙 지키면 즐거움도 2배

- 인명 보호장구 착용
- 음주운전 금지
- 운전 중 휴대폰, 이어폰 사용 금지
- 동승자 탑승 금지
-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
-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
-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